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82호

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88호(2011.7.7.)로 결정 고시된 「서초로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5월 25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대상지를 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초동 1324번지 일대 구역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하여 동남권 생활권 내 도심의 낙후지역 일대 및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·계획적 관리 도모

II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(경미한 사항)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 정	서 초 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역~강남역	503,530	서울시고시 제53호 (‘87. 2. 3)	-
기 정	서초동 13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	35,316.6	서울시고시 제36호 (‘15. 2. 12)	
변 경	서 초 로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역~강남역	540,698.1	서울시고시 제53호 (‘87. 2. 3)	구역통합, 구역 사이 도로포함

III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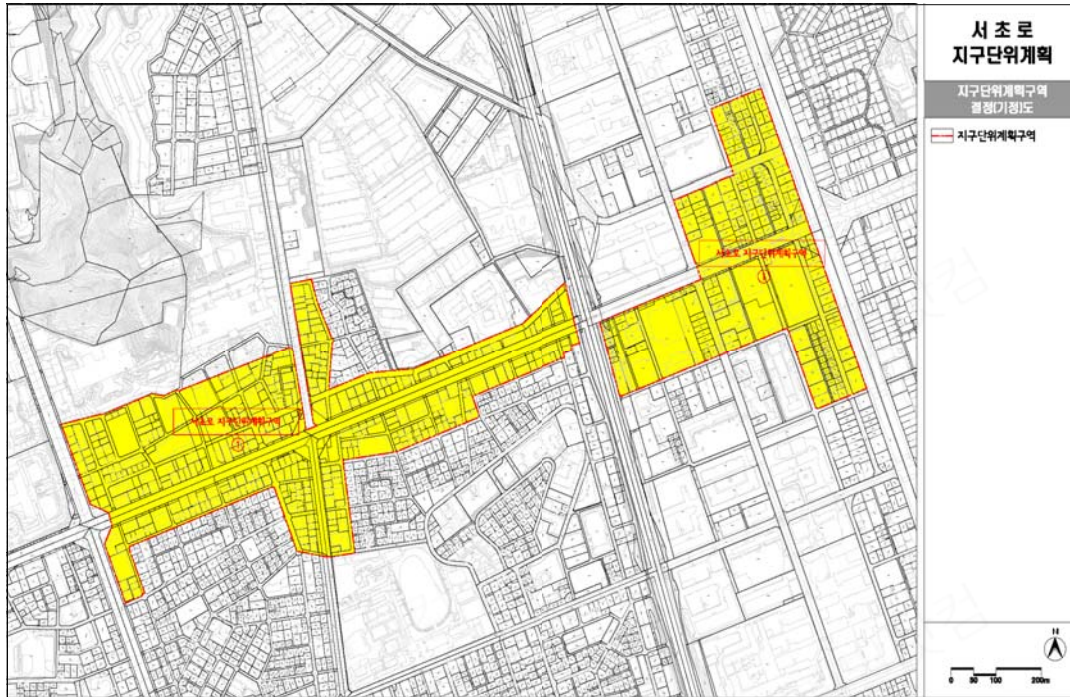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90), 서초구 도시계획과(☎ 02-2155-6781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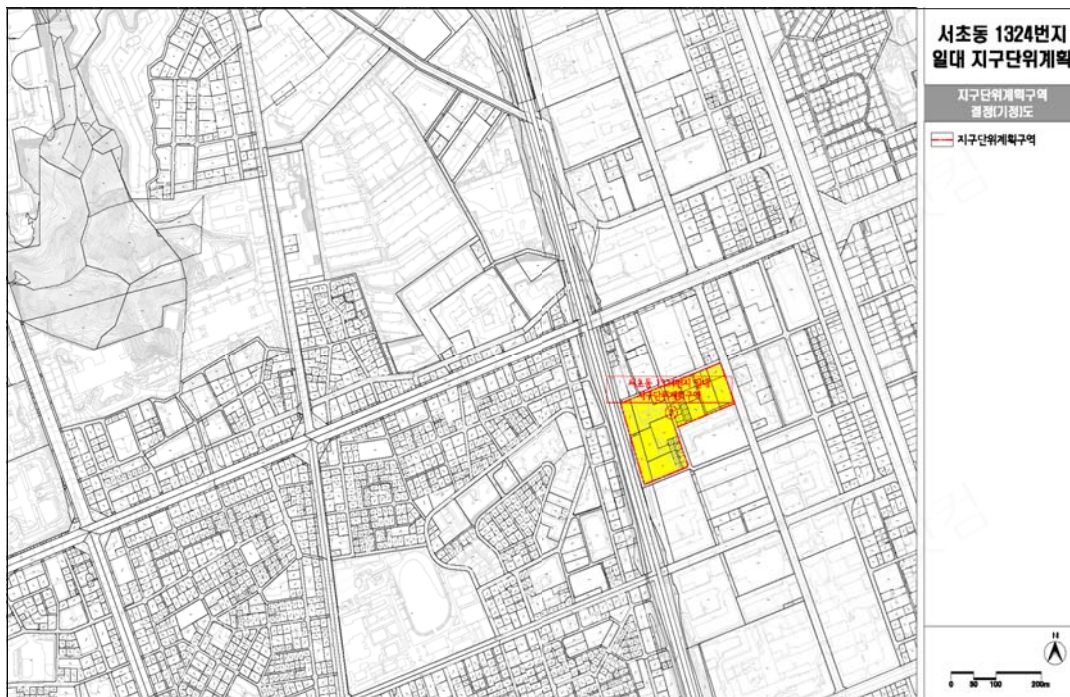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 도면 -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

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 도면 - 서초동 13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

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도면 -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

